

企業內模範特許管理体制의 設計

◇ 調 査 部 ◇

一承 前一

⑦ 出願에서 權利消滅까지의 事務節次概要 (日本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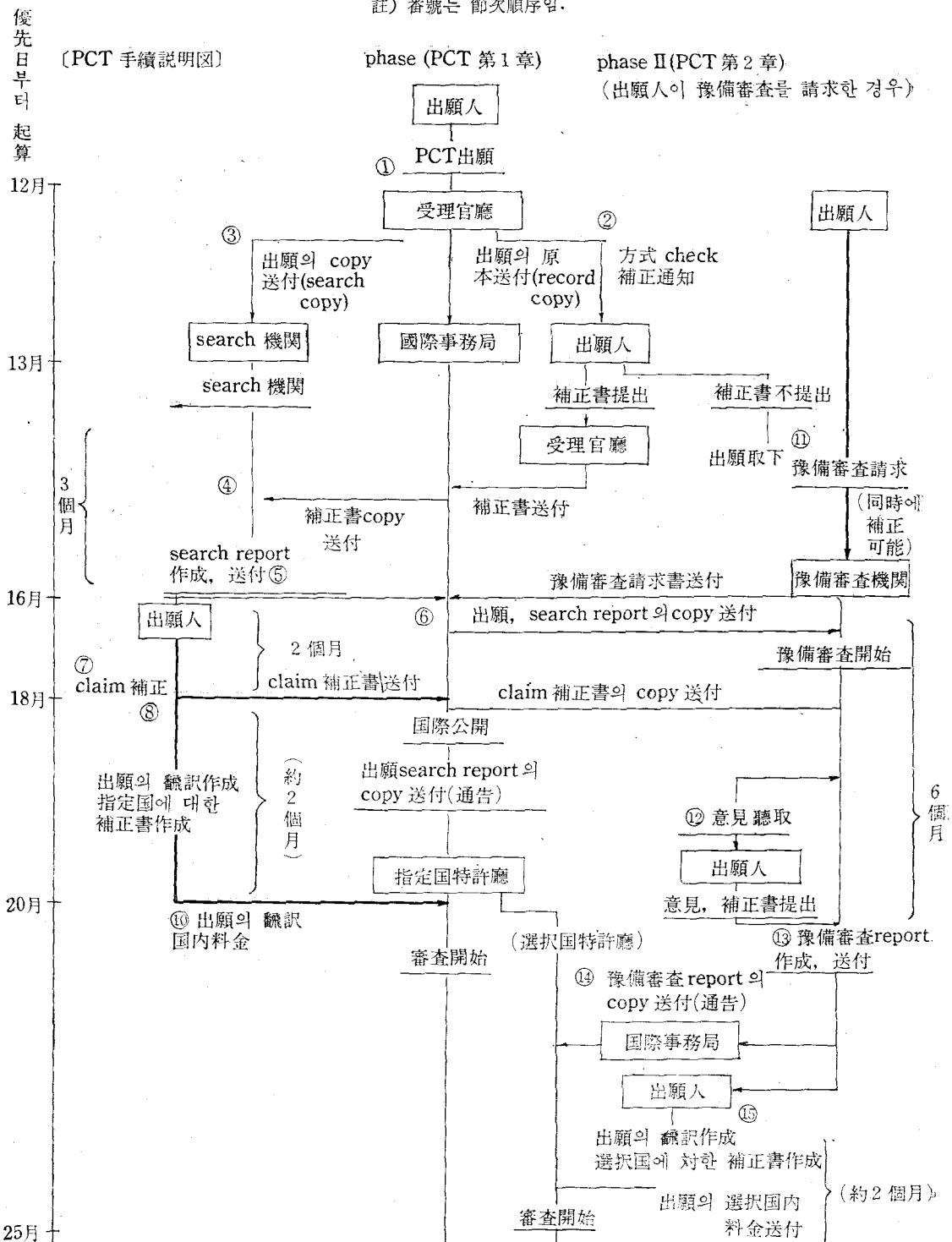
- 1) 出願에서 登錄까지의 flow와 그 過程에서 必要로 하는 費用
- ① 出 願
- 가) 郵送을 한 경우에는 登記郵便 受領證이나 通信日字印으로 確認되면 郵遞局에 낸 日時に 出願을 한 것으로 看做된다.
 - 나) 出願은 本人이 아닌 代理人에 의해서도 할수 있다.
 - 다) 出願時に 納入하는 手數料는 第 1~5圖에 圖示한 바와 같다. 즉, 特許의 경우에는 發明의 項數와는 관계없이 一律으로 5,400圓이다.
 - 라) 出願한 때부터 1年半이 經過하면 自動的으로 公報에 의하여 公開된다.
- ② 出審願查의 請求
- 가) 出願審查의 請求는 特許에 있어서는 出願을 한 때부터 7年間(實用新案은 4年間)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위의 期間中에 請求를 하지 않고 放置해 두면 그 出願은 取下된 것으로 看做된다.
 - 나) 出願의 分割 또는 出願의 變更을 하였을 경우 元來의 出願에 대하여 審查請求를 하였다 할지라도 分割 또는 變更後의 出願에 대하여 別途의 審查請求를 하지 않는限 이를 審查하지 않는다.
 - 라) 審查는 出願人自身은 勿論 第3者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第3者が 그 審查節次의 當事者가 될 수는 없다.
 - 마) 審查請求에는 費用이 든다. 이에 대하여는 第 1~5圖를 參照할 것.
- ③ 意見書, 節次補正書의 提出
- 가) 出願한 날로부터 1年 3個月까지는 時期의 制限은 없다.

- 나) 그 후에 있어서는 出願審查의 請求時に 拒絶理由通知에 대한 意見書의 提出期間등에 限定된다.
- ④ 特許異議의 申請
- 가) 公告日부터 2個月以内에는 누子를 莫論하고 特許異議申請書에 刊行物등 必要한 證據를添附하여 特許廳에 提出하고 그 出願을 拒絶하여야 한다는 것을 申請할 수 있다.
 - 나) 異議申請이 있을 경우 出願人에게 그 副本이 送付된다.
 - 다) 이에 대하여 出願人은 答辯書를 作成·提出하여 異議申請에 의한 出願의 拒絶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 ⑤ 特許料의 納入
- 가) 出願公告日부터 15年동안 每年에 대하여 特許料를 納入하여야 한다.
 - 나) 實用新案의 경우에는 10년이다.
- 2) PCT出願節次
- a) PCT(Patent Corporation Treaty)의 意義
世界的인 特許出願增加 및 多數國出願에 의한 各國特許廳의 重複된 審查에 대하여 出願人 및 特許廳의 負擔을 輕減하고자 創設된 機關이다.
從來에는 外國에 出願을 하려면 自國에 出願한 發明을 根據로 하여 各國別로 出願을 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出願人은 煩雜한 外國出願을 되풀이 해야 하였고 特許廳間에도 重複된 審查가 問題로 되어 있었다.
 - b) PCT出願의 flow chart
 - c) 節次의 概要
- ① 出願人은 特許權을 取得하고자 하는 나라를 指定하고 PCT에 의한 國際出願임을 明示하여 日本의 特許廳에 所定의 節次에 따라 願書, 明細書를 提出한다.
- ② 出願書가 不備한 경우에는 特許廳으로부터 补正通知를 받게 된다. 그 때에는 补正書를 提出한다.
- ③ 出願書類는 國際事務局에 보내지는 한편 國際

.....□ 前進的特許管理시스템 開發을 위한 (5)

第 1-6 圖 PCT 出願節次의 Flow Chart

註) 番號는 節次順序임.



□ 前進的特許管理시스템 開發을 위한 (5).....

- search 機關에도 보내지며 여기서 search를開始 한다.
- ④ Search는 原則의으로 3個月以内에 행하여진다.
 - ⑤ 그 結果 Search report가 作成되어 出願人과 國際事務局에 보내진다.
 - ⑥ 國際事務局은 原則의으로 優先日(優先權主張日 또는 優先權主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出願日)부터 18個月直後에 出願의 國際公開를 公報에 의해서 하여 出願書類와 search report의 copy를 指定國에 送付한다.
 - ⑦ 出願人은 search report를 檢討하여 出願의 取下, 繼行, 補正 등을 決定하게 되며 claim의 補正이 必要할 때에는 2個月以内에 事務局에 送付한다.
 - ⑧ 出願人은 search report를 받은 후 優先日로부터 原則의으로 20個月後에 指定國特許廳에 出願의 翻譯, 所定의 國內料金등을 提出한다. 이때 明細書, claim의 補正을 할 수 있다.
 - ⑨ 指定國의 特許廳에서는 國際事務局으로부터 보내온 search report와 出願人에게 提出되어 翻譯된 出願에 의거하여 各國의 國內法에 따라 審查를 開始한다.
 - ⑩ 出願人の 나라 및 出願을 하고자 하는 對象國이 PCT의豫備審查制度를 採用하고 있는 경우에는 PCT出願과 同時 또는 그 以後에 出願人은 國際豫備審查를 請求할 수 있다.
 - ⑪豫備審查는 上記한 search report에 의거하여 行하여지는데 이때 出願人에게는 意見書, 補正書 提出의 機會가 주어진다.豫備審查의 期間은 原則의 으로 6個月이다.
 - ⑫ 이豫備審查報告書에 의하여 出願人은 自己의 出願에 關聯된 發明의 特許性을 判斷할 수 있으며 特許를 取得할 可能성이 없는 出願은 取下할 수 있다.
 - ⑬豫備審查報告書가 補正書와 함께 出願人 및 選擇國에 送付된다.
 - ⑭ 出願人은豫備審查報告書를 받은 後 選擇國에 出願書類의 翻譯 및 國內料金을 提出한다.
 - ⑮ 審查는 그 나라의 國內法에 따라 行하여진다.
 - 3) 出願에서 權利消滅까지의 節次(第 1~7圖를 參照할 것)
 - 그림중의 數字는 關聯된 特許法의 條文을 나타낸 것이다.
 - 4) 補正이 可能한 時期와 補正許容範圍(第 1~8 圖를 參照할 것)

a) 明細書 및 圖面의 補正

出願인이 發明이라고 認識하고 明細書 특히 特許請求의範圍에 記載한 것이 그 후의 調査 또는 審查官의 審査에 의하여 判明된 出願前의 技術과의 關係로 말미암아 그대로는 特許를 할 수 없다고 判斷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特許法에서는 어떤 制限下에 出願後의 補正을 認定하고 있다.

b) 補正이 可能한 時期

第 1~8圖의 點은 線의 時期에는 어떤 制限下에 補正을 할 수 있다.

c) 補正이 可能한 範圍

- 가) 出願當初의 明細書라든가 圖面에 記載한 發明의 要旨를 變更해버리는 따위의 補正是 許容되지 않으나 當初에 記載한 範圍에서 請求의 範圍를 擴張 또는 減縮하는 變更是 할 수 있다.
- 나) 未完成의 것을 出願後의 補正에 의하여 完成하는 것은 勿論 許容되지 않는다.

補正이 可能한 範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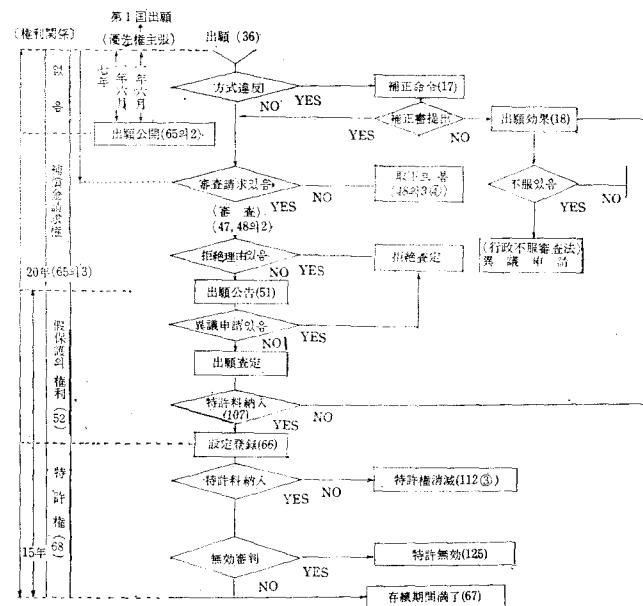
補正이 許容되는 範圍	補正이 制限에 違反된다고 判斷된 時期와 그에 대한 措置
出 願 出願當初의 明細書 圖面에 記載한 範圍에서 特許請求의 範圍를 增減變更 할 수 있다. 出願公告 决定 謄本送達 出願公告 特許請求範圍의 減縮, 誤記의 誤訂 特許查定正	審查段階에서 違反된다고 認定되었을 경우 審查段階에서 出願人은 審判을 請求하여 不服申請하거나 혹은 그것을 새 로운 出願으로 할 수 있다) 補正却下(이 却 下에 대하여는 不服申請도 할 수 없다.) 그 補正是 없었 던 것으로 看做 된다.

5) 第3者が 出願등에 關與할 수 있는 경우 第1~9圖에 나타낸 바와 같이 4가지 경우가 있다.

- ① 出願公開後에 있어서 出願審查의 請求를 할 수 있다.
- ② 出願公開後 審查請求의 有無와는 關係없이 審查에 관한 情報의 提供을 할 수 있다.

□ 前進的特許管理시스템 開發을 위한(5)

出願에서 권리消滅까지의 節次



補正① 可能한 時期

